

대전광역시한발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50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만년동 396번지”를 “둔산대로 111 (만년동)”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5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중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을 “대전광역시수목원관리사업소장”으로,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 진흥실시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중 “한밭수목원운영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제7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5조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u>만년동 396번지</u>에 소재한 <u>둔산대공원</u>안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p> <p>2. “광장”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u>둔산대공원</u>안에서 광장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수목원 <u>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u>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u>5년</u>마다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행기간이 끝나는 다음 연도에 대전광역시장에 <u>계 실행평가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광장의 사용제한) 건전한 광장관리를 위하여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8조(사용료 징수) ① (생략)</p> <p>② 소장은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조(목적) ----- <u>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u> -----</p> <p>-----</p> <p>-----</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p> <p>-----</p> <p>----- <u>둔산대로 111(만년동)</u> -----</p> <p>-----</p> <p>2. -----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 제19조 -----</p> <p>-----</p> <p>제3조(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수목원관리사업소장 -----</p> <p>-----</p> <p>----- <u>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라 한다) 진흥실시계획</u> -----</p> <p>-----</p> <p>제7조(광장의 사용제한) -----</p> <p>-----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징수)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p> <p><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 소장은 수목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p>	<p>제12조(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 ----- -----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 ----- -----</p>
<p>제12조의2(운영자문위원회)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u>한밭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⑥ (생략)</p> <p>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제12조의2(운영자문위원회) ① ----- ----- ----- <u>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⑦<u>위촉위원</u>----- ----- ----- -----</p> <p>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공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대전광역시 공원조례」를 준용한다.</p>	<p>제15조(준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p>

□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 ②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7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1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9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7. 2

다. 상 정 일 자 :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7.11)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유상혁)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공유 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15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에 대한 정의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명 및 법조문을 변경하고,
- “수목원”을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명 및 개정 사항과 조례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그러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9일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관련조례를 뒤늦게 개정하는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음.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